

## 「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」 신.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	비고
제1조(약관의 적용) ① ~ ⑥ (생략)	제1조(약관의 적용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	
<신 설>	<u>⑦ 당사자가 증권의 유형과 매입 가액을 우선하여 정하고 구체적인 증권의 종목과 수량은 나중에 정하는 형태의 환매조건부매매거래(이하 “증권유형별 거래” 라 한다)를 하는 경우에는 &lt;별첨 7&gt;을 함께 적용한다.</u>	

〈별첨 7〉

## 증권유형별 거래

1. 증권유형별 거래 시 본 별첨 각항의 규정과 약관 및 약정서의 다른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별첨 각항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한다.
2. 증권유형별 거래 시 매매거래확인서 상의 “매입증권” 을 매입증권 대신 “증권유형” 으로 하며, 증권유형을 대상으로 거래를 우선 체결한 후 매도자는 해당 증권유형에 속하는 매입증권을 매수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.
3. 증권유형별 거래 시 약관 제5조 제1항에 따라 거래당사자 쌍방 간 교부하는 증거금증권은 사전에 약정한 증권유형에 속하는 증권으로 제한한다.
4. 증권유형별 거래 시 약관 제5조 제10항 및 제7조 제5항에 따라 매도자가 교부하는 매입증권은 사전에 약정한 증권유형에 속하는 증권으로 제한한다.
5. 증권유형별 거래 시 약관 제10조 제1항 및 제3항, 제7조 제5항을 적용할 경우 매입증권 및 증거금증권의 대체는 사전에 약정한 증권유형에 속하는 증권으로 제한한다.
6. 증권유형별 거래 시 약관 제10조 제1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매도자의 매입증권 또는 증거금증권 대체 요청에 대해 매수자의 건별 동의를 요하지 않는 형태의 거래(이하 “사전포괄동의 거래” 라 한다)를 체결할 수 있다.
7. 사전포괄동의 거래에 한하여 매도자의 매입증권 또는 증거금증권 대체 요청을 매수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, 이는 약관 제12조 제1항에 따른 환매일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.
8. 증권유형별 거래시 본 별첨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예탁결제원 「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」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에 의한다.